

한가족보험 주보험 약관 (개인형)

한가족보険 주보험(개인형)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정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정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보험기간의 구분]

-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가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피보험자가 기준연령이 된 날로부터 만70세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제2보험기간, 피보험자가 만70세가 된 날부터를 제3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 있어서의 기준연령은 만50세, 55세, 60세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령으로 합니다.

제 3 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내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일련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① 계약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시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조의 2 [사망의 정의]

① 이 보험에 있어서 “사망”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 중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다만, 제3보험기간 중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이라 함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증선고가 있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 3 조의 3 [회사가 계약한 보험인내장들의 표력]

보험을 보험한 자(이하 “보험인정”이라 합니다)가 보험개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인내장(사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인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니다.

제 4 조 [계약 통성법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송금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1년단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 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기산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부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정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1. 제1보험기간 종료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자녀자립자금 지급
2. 제1보험기간중 개시일 이후 매년(1종) 또는 매2년(2종)마다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1종 : 자동차관리자금 지급
 - 2종 : 건강진단자금 지급
3. 제2보험기간 종료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고학축하금 지급
4. 제2보험기간중 개시일 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생활여유자금 지급
5. 제3보험기간중 개시일 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 건강관리자금 지급
6.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7.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3(고통제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 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하였을 때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8.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9. 제2보험기간 및 제3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10.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이하 "장해" 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제해장해급여금 지급
11.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정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의 경우 정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정해진단을 기준으로 정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1보험기간중에 두종목 이상의 정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수여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수여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기준된 정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된 정해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의 한기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가 제5항에 규정하는 정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 다음중 한기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해에 대하여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일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정해 또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정해

⑧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 하고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로 합니다.

⑨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존보험금”이라 합니다.

제 8 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시원정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진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 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전쟁 기타 범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범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기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무부정관의 인기를 얻어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시장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고지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기준 작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일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시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약시에 피보험자의 작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 기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집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질치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임 또는 애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생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운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7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4 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5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 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성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봉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기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봉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 15 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의원대출이율이나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시급금의 핍액에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세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됩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제 16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성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송낙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 제3항, 제3조,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등 청구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신진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재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8 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7조에 정한 사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加산하여 드립니다.
- ③ 제7조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더라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신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생존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⑥ 생존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9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8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일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의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증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0 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빼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 21 조 [계약자의 입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고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22 조 [악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 22 조의 2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보험증권의 제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제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 26 조 [보험보증 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피신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 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7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계약변경 특칙 >>

제 28 조 [특칙의 적용]

① 이 특칙은 다음의 각호를 동시에 만족하는 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결혼을 사유로 계약자로부터 이 보험의 부부형계약으로의 보험종목 변경의 요청이 있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의 유효한 계약

2. 약관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하는· 장해급여금 중 제2급 내지 제4급 장해급여금 또는 제7조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용기 발생하지 않은 계약

② 개인형 계약에 부기되어 있던 특약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주보험과 동시에 그 각각의 부부형 특약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9 조 [계약변경의 승낙]

① 제28조의 요청이 있은 경우에는 회사는 약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후 계약의 종피보험자는 변경전 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변경전 계약의 피보험자와의 결혼으로 호적상의 배우자의 자리를 취득한 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을 한 경우, 회사는 변경후 계약이 변경전 계약의 책임개시 일에 체결되었을 경우의 책임준비금과 변경전 계약의 책임준비금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생존급여금의 적립액, 핵정배당금 등 기타 배당금액은 정신하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권리를 변경후 계약이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승낙이 있고 제2항의 일시금이 납입된 경우, 회사는 그 일시금이 납입된 날(이하 “변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변경후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변경전 계약은 변경일로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0 조 [변경전 계약으로의 환원]

① 변경후 계약의 종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하여 변경전 계약 약관을 적용하며, 이후 변경전 계약으로 환원합니다.

1.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인 경우

2.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리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3. 변경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원원이 있었던 경우, 회사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납하여 드립니다.

1. 변경시 납입한 월시금과 변경후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약
2.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변경전 계약에 의하여 변경일 이후 납입되었어야 할 보험료의 합계약

제 31 조 [변경후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부형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2 조 [증권의 재발급]

회사가 제29조의 계약변경을 승낙한 경우, 회사는 변경전 계약의 책임개시일에 변경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여, 증권을 재발급합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
40세, 세남, 월납, 1종

가. 5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771 | 0 | 786 | 0 |
| 1 년 | 9,252 | 5,772 | 9,432 | 6,112 |
| 5 년 | 46,260 | 41,820 | 47,160 | 43,666 |
| 10 년 | 92,520 | 104,247 | 94,320 | 107,591 |
| 20 년 | 92,520 | 69,587 | 94,320 | 75,141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자동차관리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희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나. 55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475 | 0 | 479 | 0 |
| 1 년 | 5,700 | 2,370 | 5,748 | 2,592 |
| 5 년 | 28,500 | 21,797 | 28,740 | 23,112 |
| 10 년 | 57,000 | 54,036 | 57,480 | 56,949 |
| 20 년 | 57,000 | 31,537 | 86,220 | 66,417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자동차관리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희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다. 6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342 | 0 | 341 | 0 |
| 1 년 | 4,104 | 854 | 4,092 | 1,008 |
| 5 년 | 20,520 | 12,877 | 20,460 | 13,864 |
| 10 년 | 41,040 | 31,665 | 40,920 | 34,165 |
| 20 년 | 82,080 | 101,177 | 81,840 | 105,443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자동차관리자금, 자녀사립자금, 생활이유자금
고희 죽히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
40세, 세남, 월납, 2종

가. 5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779 | 0 | 794 | 0 |
| 1 년 | 9,348 | 5,871 | 9,528 | 6,211 |
| 5 년 | 46,740 | 41,416 | 47,640 | 43,258 |
| 10 년 | 93,480 | 104,247 | 95,280 | 107,591 |
| 20 년 | 93,480 | 69,587 | 95,280 | 75,141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자금, 지녀지립자금, 생활이유자금
고희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나. 55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491 | 0 | 496 | 0 |
| 1 년 | 5,892 | 2,562 | 5,952 | 2,787 |
| 5 년 | 29,460 | 21,945 | 29,760 | 23,266 |
| 10 년 | 58,920 | 55,418 | 59,520 | 58,335 |
| 20 년 | 88,380 | 61,507 | 89,280 | 66,417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자금, 지녀지립자금, 생활이유자금
고희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다. 6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357 | 0 | 355 | 0 |
| 1 년 | 4,284 | 1,022 | 4,260 | 1,178 |
| 5 년 | 21,420 | 12,886 | 21,300 | 13,871 |
| 10 년 | 42,840 | 32,702 | 42,600 | 35,186 |
| 20 년 | 85,680 | 101,177 | 85,200 | 105,443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의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계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급여명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생존 | 자녀자립자금 | 제1보험기간 종료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50% | | |
| | 1 중 지동차 권리자금 | 제1보험기간종 개시일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1% | | |
| | 2 중 건강 절단자금 | 제1보험기간종 개시일이후 제2해마다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2.5% | | |
| 시 | 고희족하금 | 제2보험기간 종료시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25% | | |
| | 생활어유자금 | 제2보험기간종 개시일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2.5% 부터 매년 0.25%씩 세증시급 | | |
| 시 | 건강관리자금 | 제3보험기간종 개시일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5% | | |
| | 일반사망보험금 | 제1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50% | | |
| 망시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제1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 | | |
|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 제1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50% | | |
| | 사망보험금 | 제2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50% | | |
| | | 제3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25% | | |
| 경해시 | 일반재해장해급여금 | 제1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침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 정해상태가 되었을 때 | 2급 | 3급 | 4급 |
| | | | 35% | 25% | 15% |
| | | | 5급 | 6급 | |
| | | | 7.5% | 5% | |
| 경해시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 제1보험기간종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원인으로 침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 정해상태가 되었을 때 | 2급 | 3급 | 4급 |
| | | | 70% | 50% | 30% |
| | | | 5급 | 6급 | |
| | | | 15% | 10% | |
| 보험료 납입면제 | | 피보험자가 침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 침해시 사회보장부의 보험료 납입면제 | | | |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생해의 힘은 유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그 원인에 의한 병상이나 부수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자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중 순장 및 통증의 외안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류 항 목 | 분류 번호 |
|---|----------------------------|
| 1. 철도 사고 | E 800 - E 807 |
| 2. 자동차 교통 사고 | E 810 - E 819 |
|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 E 820 - E 825 |
| 4. 기타 도로 교통 기관 사고 | E 826 - E 829 |
| 5. 수상 교통 기관 사고 | E 830 - E 838 |
|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 기관 사고 | E 840 - E 845 |
| 7. 다른 곳에 불려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콘베어 등) | E 846 - E 848 |
| 8. 암울 및 의약품에 의한 물의의 중독 또는 암울 접촉에 의한 일회로기 피부성은 제외한다. | E 850 - E 858 |
|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물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시인분류상 001 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E 860 - E 869 |
| 10. 외과적 뿐 내과적 치료증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고의로는 사고는 제외한다. | E 870 - E 876 |
| 11. 물의의 추락 | E 880 - E 888 |
|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물의의 사고 | E 890 - E 899 |
|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물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순실로 인한 될수는 제외한다. | E 900 - E 909 (276.5) |
| 14. 악수, 질식 및 임을에 의한 물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장해는 제외된다. | E 910 - E 915 |
| 15. 기타 물의의 사고 다만 과도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 E 916 - E 928 (E 927) |
| 16. 치료실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 E 930 - E 949 |
| 17. 타실 및 타인의 기해에 의한 상해 | E 960 - E 969 |
| 18. 법적개입, 다면, 처형은 제외한다 | E 970 - E 978 (E 978) |
| 19. 물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 E 980 - E 989 |
| 20. 물의의 충격 | |
| 21. 물의의 충돌 | |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험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회제,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자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개찰구의 양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운행중 긴조율, 공작물 등의 도과 또는 건조율, 도과율 등으로부터의 역하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 1호에 교통기관이라 험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등
 - 다. 항공기, 선박 (롯트, 모티보트, 보트를 말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 1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체육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험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될 목적으로 광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고랑, 도선시설 등 도로의 일체가 되어 그 효능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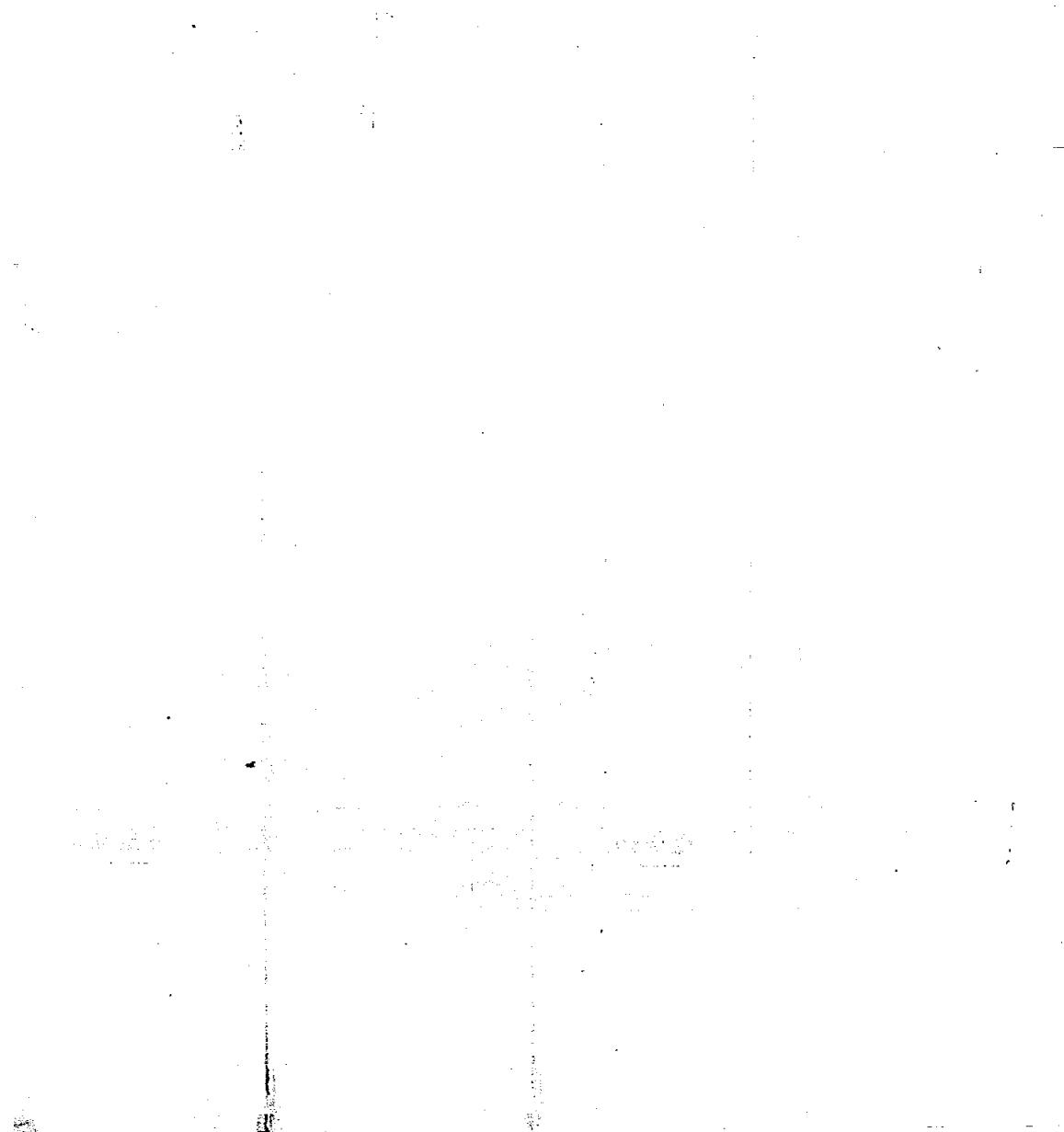
장해 등급 분류 표

| 등급 | 신체 장해 |
|-------|--|
| 제 1 급 | 1.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을 때 4.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을 때 5.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거나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6.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거나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7.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거나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8.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거나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9. 시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
| 제 2 급 | 1.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제 3 급 | 1.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글 및 한글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제 4 급 | 1.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2.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3.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4.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5.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6.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7.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8.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9.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10.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11.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12.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13. 시력을 각각 높은 영구히 날것을 때 |

(상해능급분류 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 생활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하이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런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ㆁ,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순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유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통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대사별(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 + 2b + 2c + d)$ 의 값이 80데시별(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별(청력검사 단위)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일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한가족보험 주보험 약관 (부부형)



한 가족 보험 주보 험 (부부 험)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끝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성]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 및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인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에 의해서 제1왕이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 이후 새로이 제1왕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배우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보험기간의 구분]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보험자가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주피보험자가 기준연령이 됨 날로부터 만70세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제2보험기간, 주피보험자가 만70세가 된 날부터를 제3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왕에 있어서의 기준연령은 만50세, 55세, 60세 중 계약자가 선택한 연령으로 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제 6 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탁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가 7 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탁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탁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탁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7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부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 1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시황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사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제1보험기간 종료시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살아있을 때
: 자녀자립자금 지급

2. 제1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매년(1종) 또는 매2년(2종)마다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살아있을 때

[1종 : 자동차관리자금 지급
2종 : 건강진단자금 지급]

3. 제2보험기간 종료시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살아있거나 1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 고희축하금 지급

4. 제2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살아있거나 1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 생활이유자금 지급

5. 제3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살아있거나 1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 건강관리자금 지급

6. 제1보험기간 종료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7. 제1보험기간 종료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별표3(교통제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교통제해” 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교통제해사망보험금 지급

임을 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2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액을 하고 정액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정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주피보험자와 증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조의 2 [시망의 정의]

① 이 보험에 있어서 “시망”이라 함은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 중에는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정체를 포함합니다.
 다만, 제3보험기간 중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정체상태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이라 함은 생사가 고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증설고가 있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전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 4 조의 3 [회사가 제작한 보험인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자,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인내장(서류, 시전, 도록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자가 정액을 설정한 때에는 5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② 계약자가 정액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액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8.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9. 제2보험기간 및 제3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10.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Ⅱ중 제2급 내시 제6급 장해(이하 "장해" 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
11.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장해급여금 지급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Ⅱ중 제1급 내시 제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회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장해 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1보험기간중에 두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기 다른 교통재해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가 제5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 이미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⑧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의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의 책임개시일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교통 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⑧ 교통 재해장해급여금 지급한도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각각에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로하고 일반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각각에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35%로 합니다.
 - ⑨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존보험금”이라 합니다.

제 9 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개신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1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증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한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증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순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또는급여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자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기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친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사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정약일 이전에 임 또는 애이즈의 진단학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8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15 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일련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6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지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고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 16 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시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체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제 17 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성악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 이용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기준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 제3항, 제4조,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미시류]

수의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급여금, 해악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9 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악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시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내에 보험금, 급여금 또는 해악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加산하여 드립니다.
- ③ 제8조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악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비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악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생존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시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⑥ 생존보험금과 해악환급금은 그 시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加산하여 드립니다.

제 20 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시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8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9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시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21 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미만은 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 2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고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기산하여 드립니다.

제 23 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화수합니다.

제 23 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경.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24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시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관할 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6 조 [보험증권의 제교부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제교부등을 해드립니다.

제 27 조 [보험보증기금의 차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피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28 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개인보험가입금액 : 10만
40세, 세납, 월납, 1종]

가. 5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904 | 0 | 897 | 0 |
| 1 년 | 10,848 | 7,102 | 10,764 | 6,944 |
| 5 년 | 54,240 | 49,394 | 53,820 | 48,601 |
| 10 년 | 108,480 | 122,344 | 107,640 | 121,253 |
| 20 년 | 108,480 | 95,517 | 107,640 | 93,599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자동차관리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화 촉진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나. 55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566 | 0 | 561 | 0 |
| 1 년 | 6,792 | 3,255 | 6,732 | 3,123 |
| 5 년 | 33,960 | 26,791 | 33,660 | 26,062 |
| 10 년 | 67,920 | 65,745 | 67,320 | 64,297 |
| 20 년 | 101,880 | 86,370 | 100,980 | 84,503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자동차관리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화 촉진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다. 6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413 | 0 | 408 | 0 |
| 1 년 | 4,956 | 1,514 | 4,896 | 1,401 |
| 5 년 | 24,780 | 16,586 | 24,480 | 15,928 |
| 10 년 | 49,560 | 40,283 | 48,960 | 38,800 |
| 20 년 | 99,120 | 124,974 | 97,920 | 123,158 |

단, 해약환급금 애시표에는 당해년도의 자동차관리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객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 해약보험가입금액 : 10만
■ 40세, 세남, 월납, 2종

가. 5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912 | 0 | 905 | 0 |
| 1 년 | 10,944 | 7,201 | 10,860 | 7,042 |
| 5 년 | 54,720 | 48,992 | 54,300 | 48,203 |
| 10 년 | 109,440 | 122,344 | 108,600 | 121,253 |
| 20 년 | 109,440 | 95,517 | 108,600 | 93,599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객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나. 55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583 | 0 | 577 | 0 |
| 1 년 | 6,996 | 3,446 | 6,924 | 3,312 |
| 5 년 | 34,980 | 26,935 | 34,620 | 26,202 |
| 10 년 | 69,960 | 67,125 | 69,240 | 65,674 |
| 20 년 | 104,940 | 86,370 | 103,860 | 84,503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여유자금
고객 축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다. 60세형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427 | 0 | 422 | 0 |
| 1 년 | 5,124 | 1,683 | 5,064 | 1,568 |
| 5 년 | 25,620 | 16,597 | 25,320 | 15,941 |
| 10 년 | 51,240 | 41,327 | 50,640 | 39,856 |
| 20 년 | 102,480 | 124,974 | 101,280 | 123,158 |

단, 해약환급금 예시표에는 당해년도의 건강진단자금, 자녀자립자금, 생활어유자금
고희 죽하금 및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음.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계약보험가입금액 기준)

| 급여명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 | 주피보험자 | 증피보험자 |
| 생존시 | 자녀자립자금 | 제 1 보험기간 종료시 주피보험자 및 증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 | ✓ 50 % | |
| | 자동차관리자금 | 제 1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개시일 이후 매년마다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및 증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 | | 1 % |
| | 건강진단자금 | 제 1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개시일 이후 매년마다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및 증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 | ✓ 2.5 % | |
| | 고화축하금 | 제 2 보험기간 종료시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동시에 1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 | 25 % |
| | 생활여유자금 | 제 2 보험기간 종 개시일 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동시에 또는 1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 2.5%부터 매년 0.25%씩 체증지급 | |
| | 간강권리자금 | 제 3 보험기간 종 개시일 이후 매년의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동시에 또는 1인이라도 살아있을 때 | | 5 % |
| 사망시 | 일반사망보험금 | 제 1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 50 % | 35 % |
|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제 1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고름재해인과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 100 % | 70 % |
| 교통제해사망보험금 | | 제 1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교통제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 150 % | 105 % |
| | | 제 2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50 % | 35 % |
| | 사망보험금 | 제 3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25 % | 17.5 % |
| 장해시 | 일반제해장해급여금 | 제 1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교통제해인과의 제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급 35 % 5급 7.5 % | 3급 25 % 6급 5 % |
| | 교통제해장해급여금 | 제 1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가 교통제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급 70 % 5급 15 % | 3급 50 % 6급 10 % |
| | | | | |
| | 보험료 납입면제 | 증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자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시 사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 | |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란 환경을 무방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용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별별하거나 후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힐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경제기획원·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중 *이 분류 및 풍물의 외안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
| 1. 철도 사고 | E 800 - E 807 |
| 2. 자동차 교통 사고 | E 810 - E 819 |
|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 E 820 - E 825 |
|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 E 826 - E 829 |
|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 E 830 - E 838 |
|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 E 840 - E 845 |
| 7. 다른 곳에 물을 넘지 아니한 차량사고 (캐이슬기, 트롤리 등) | E 846 - E 848 |
|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증동 다만 외용약제는 약물접촉에 의한 일례로 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 E 850 - E 858 |
|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인한 불의의 증동 다만 한국표준 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E 860 - E 869 |
|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 E 870 - E 876 |
| 11. 불의의 추락 | E 880 - E 888 |
|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E 890 - E 899 |
| 13. 전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극히한 액체순실로 인한 털수는 제외한다. | E 900 - E 909 (276.5) |
| 14. 압수·질식 및 아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침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심장장해는 제외한다. | E 910 - E 915 |
|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갑작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 E 916 - E 928 (E 927) |
| 16. 치료실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 E 930 - E 949 |
| 17. 타설 및 타언의 기해에 의한 상해 | E 960 - E 969 |
| 18. 법적개입, 다만, 처벌은 제외한다 | E 970 - E 978 (E 978) |
|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 E 980 - E 989 |
| 20. 진정행위에 의한 상해 | E 990 - E 999 |
| 21. 기타 | |

(별표 3)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칭한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 (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의 중돌, 접촉, 회체,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 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 통행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과 또는 건조물, 도과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칭한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촉물시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휴차, 경운기 및 우마차등
- 다. 항공기, 선박 (돛트, 모터보트, 보트를 말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4. 제 1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투목작업장, 체육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칭한 일련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고랑,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능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 4)

장 해 등급 분류 표

| 등급 | | 신체 장해 | |
|-------|--|---|--|
| 제 1 급 | | 1. 두 눈의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두 손에 먹는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거나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앓았을 때 3.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앓았을 때 평생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기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6. 빙모이상을 잃었거나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7. 편의를 높여주는 장애가 있는 경우 8. 신경증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9. 신경증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 | |
| 제 2 급 | |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 손가락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중 2 관절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또는 한 다리를 중 3 관절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또는 한 다리를 중 2 관절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또는 한 다리를 중 3 관절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또는 한 다리를 중 2 관절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제 3 급 | | 1. 한 눈의 시력을 원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또는 한 손에 먹는 기능을 원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 제 4 급 | |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2.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3.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4.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5.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6.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7.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8.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9.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10.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11.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12.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13. 또는 두 손에 먹는 기능에 두 번째 정해를 영구히 넘겼을 때 | |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 생활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런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일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ㅂ, ㅍ, ㅃ), 치설음(ㄴ, ㄷ, ㅌ),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이증으로서 음성인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일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대시별(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 + 2b + 2c + d)$ 의 값이 80데시별(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별(청력검사 단위)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필다리를 완전 염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필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필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필다리 각각의 3대관절(짧은 이끼관절, 필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빌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필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필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기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기슴 등뼈 아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밀접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밀접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종족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필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디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증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필, 두다리, 한필과 한디리, 10손가락 또는 빌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한가족보험 입원특약 약관 (개인형)

한가족보험 입원특약 (개인형)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당시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제 3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 조 [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회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3(성인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성인병의 진단회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병리조직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내시경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섭부되어야 합니다.

제 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 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 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기 성인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성인병입원급여금 추가지급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1일수를 합산하여 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원인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후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 1항의 경우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판정은 그 입원이 이루어진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입원중의 병명 변경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초의 입원사유에 의한 핍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원인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한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진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디아그노스터에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 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 2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자동대출납입하는 경우나 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입증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 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시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로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기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신축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시유기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기산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약 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는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고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
[40세, 60세남, 월납]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47 | 0 | 49 | 0 |
| 1 년 | 564 | 0 | 588 | 0 |
| 5 년 | 2,820 | 1,042 | 2,940 | 1,187 |
| 10 년 | 5,640 | 2,406 | 5,880 | 2,720 |
| 20 년 | 11,280 | 5,523 | 11,760 | 6,046 |
| 만 기 | 11,280 | 0 | 11,760 | 0 |

(별표 1)

보 험 금 지급 기준 표

| 구 분 | 지급 사유 | 지급 액 |
|----------|-------------------------------|--|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제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 1,000 해당액 |
| 성인병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성인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시 | 30일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 1,000 해당액을 추가지급 |

(별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분류항목 | 국제기본 분류 번호 |
|---|-------------|
| 1.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001 ~ 139 |
| 2. 신생물 | 140 ~ 239 |
|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 240 ~ 279 |
| 4.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 280 ~ 289 |
| 5.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 320 ~ 389 |
| 6. 순환기계의 질환 | 390 ~ 459 |
| 7. 호흡기계의 질환 | 460 ~ 519 |
| 8. 소화기계의 질환 | 520 ~ 579 |
| 9.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580 ~ 629 |
| 10. 임신, 출산 및 산후의 합병증 | 630 ~ 676 |
| 11. 피부 및 파하조직의 질환 | 680 ~ 709 |
|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710 ~ 739 |
| 13. 주신기에 관련된 일정한 병태 | 760 ~ 779 |
| 14. 증상, 징후 및 불명확한 병태 | 780 ~ 799 |
| 15. 손상 및 중독 | 800 ~ 999 |
| -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보조분류 •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4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 E800 ~ E999 |

(주) 다음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애 (심신상실, 심비약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외보철과 정성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인가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 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 3)

성인병 분류표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인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1. 악성신생물 | 140 ~ 208 230 ~ 234 |
| 2. 당뇨병 | 250 |
| 3. 민성 류마티스성 심질환 | 393 ~ 398 |
| 4. 고혈압성 질환 | 401 ~ 405 |
| 5. 혈액성 질환 | 410 ~ 414 |
| 6. 기타 심질환 | 420 ~ 429 |
| 7. 뇌혈관 질환 | 430 ~ 438 |

한가족보험 입원특약 약관 (부부형)

한국족보협 입원특약 (부부형)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따른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한급금을 드립니다.

제 2 조 [성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인분류"에 의 하여 별표3(성인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성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사의 자격을 기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병리조작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 소견(X선, 내시경등), 임상학적 소견 및 수술 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점부되어야 합니다.

제 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지체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시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별표2(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제해(이하 "질병 또는 제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 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2.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성인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성인병입원급여금 추가지급

②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원인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후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 1항의 경우 입원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판정은 그 입원이 이루어진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입원중의 병명 변경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초의 입원사유에 의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원인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 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종피보험자가 그 종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 1항의 경우 한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기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혜택 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 2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자동내출납입하는 경우나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⑤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정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정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탁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기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급여금,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시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은행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加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시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加산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때는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 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입의해지]

-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기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관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약시까지 이 약관을 고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정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년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
40세, 60세남, 월납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72 | 0 | 83 | 0 |
| 1 년 | 864 | 0 | 996 | 53 |
| 5 년 | 4,320 | 1,734 | 4,980 | 1,992 |
| 10 년 | 8,640 | 3,807 | 9,960 | 4,372 |
| 20 년 | 17,280 | 8,488 | 19,920 | 9,990 |
| 만 기 | 17,280 | 0 | 19,920 | 0 |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 표

| 구 분 | 지급 사유 | 지급 액 |
|----------|-------------------------------|---|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 주피보험자 : 1/1,000 해당액 - 종피보험자 : 0.6/1,000 해당액 |
| 성인병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성인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시 | 30일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 주피보험자 : 1/1,000 해당액 - 종피보험자 : 0.6/1,000 해당액 |

(별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분 류 항 목 | 국제기본 분류 번호 |
|---------------------------------------|-------------|
| 1.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001 ~ 139 |
| 2. 신 생 물 | 140 ~ 239 |
|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 240 ~ 279 |
| 4.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 280 ~ 289 |
| 5.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 320 ~ 389 |
| 6. 순환기계의 질환 | 390 ~ 459 |
| 7. 호흡기계의 질환 | 460 ~ 519 |
| 8. 소화기계의 질환 | 520 ~ 579 |
| 9.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580 ~ 629 |
| 10. 임신, 출산 및 산후의 합병증 | 630 ~ 676 |
|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680 ~ 709 |
|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710 ~ 739 |
| 13. 주산기에 관련된 일정한 병태 | 760 ~ 779 |
| 14. 종상, 정후 및 불명확한 병태 | 780 ~ 799 |
| 15. 손상 및 중독 | 800 ~ 999 |
| - 손상 및 중독의 원인에 대한 보조분류 - | E800 ~ E999 |
| .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 |
|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 |

(주) 다음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 (심신성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인가 도·코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 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별표 3)

성인병 분류표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인병'은 한국표준질병시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1. 악성신생물 | 140 ~ 208 230 ~ 234 |
| 2. 당뇨병 | 250 |
| 3. 만성 류마티스성 심질환 | 393 ~ 398 |
| 4. 고혈압성 질환 | 401 ~ 405 |
| 5. 하혈성 심질환 | 410 ~ 414 |
| 6. 기타 심질환 | 420 ~ 429 |
| 7. 뇌혈관 질환 | 430 ~ 438 |

한가족보험 여성별보장을 위한 약관 (개정형)

한기족보협약서(개인형)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원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원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 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획정]

- ① 이 보험에 있어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2(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질병의 진단획정은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방리조직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소견(X선, 내시경등), 임상학적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침부되어야 합니다.

제 3 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의 의하여 특정질병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지내동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한민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하며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권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재(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人),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별표3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 참조)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입원급여금 지급

2. 특정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

다만,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수술급여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쪽 한가지 수술만을 받은 것으로 하여 수술급여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 1항 제1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 제 3항의 경우 통일 특정질병(이외 의학상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회사기 인정한 질병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통일 특정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른 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하여 2회이상 입원 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보험 기간중에 발생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 또는 수술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 또는 수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고의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 또는 수술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 또는 수술하게 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2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지동대출납입하는 경우나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별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개별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의사 또는 개별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치고증명서 (입원 또는 수술진단서, 의사의 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시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④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시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주계약과 함께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
40세, 60세남, 월납]

| 구 분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17 | 0 |
| 1 년 | 204 | 0 |
| 5 년 | 1,020 | 253 |
| 10 년 | 2,040 | 816 |
| 20 년 | 4,080 | 1,995 |
| 민 기 | 4,080 | 0 |

(별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입원급여금 |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 1,000 해당액 |
| 수술급여금 | 특정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 하였을 때 | 1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1000 2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1000 3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1000 |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 분류항목 | 국제기본분류번호 |
|---|-----------|
| 1. 구순(口脣), 구강(口腔), 및 인두(咽頭)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40 ~ 149 |
| 2. 소화기(消化器) 및 복막(腹膜)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50 ~ 159 |
| 3. 호흡기(呼吸器) 및 흉곽내장기(胸廓內臟器)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60 ~ 165 |
| 4. 뼈, 결합조직(結合組織), 피부(皮膚) 및 유방(乳房)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70 ~ 175 |
| 5. 비뇨생식기(泌尿生殖器)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79 ~ 189 |
| 6. 기타 및 상세불명부위(詳細不明部位)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90 ~ 199 |
| 7. Lympha 조직(組織) 및 조혈조직(造血組織)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200 ~ 208 |
| 8. 유방(乳房)의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17 |
| 9. 자궁(子宮)의 평활근증(平滑筋腫) | 218 |
| 10. 자궁(子宮)의 기타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19 |
| 11. 난소(卵巢)의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20 |
| 12. 기타의 여성성기(女性性器)의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21 |
| 13. 정상소재(正常所在)의 암종(癌腫) | 230 ~ 234 |
| 14. 당뇨병(糖尿病) | 250 |
| 15. 만성(慢性)류마치스성 심질환(心疾患) | 393 ~ 398 |
| 16. 고혈압성질환(高血壓性疾患) | 401 ~ 405 |
| 17. 하혈성심질환(虛血性心疾患) | 410 ~ 414 |
| 18. 기타형의 실질환(其他心疾患) | 420 ~ 429 |
| 19. 뇌혈관질환(腦血管疾患) | 430 ~ 438 |
| 20. 유방(乳房)의 장해(障害) | 610 ~ 611 |
| 21. 여성골반내장기(女性骨盤內臟器)의 염증성질환(炎症性疾患) | 614 ~ 616 |
| 22. 여성생식로(女性生殖路)의 기타장해(其他障害) | 617 ~ 629 |

| 분류정목 | 국제기본분류번호 |
|--|-----------|
| 23. 유산이 초래되는 임신 | 630 ~ 639 |
| 24. 주로 임신(妊娠)에 관련된 합병증(合併症) | 640 ~ 648 |
| 25. 임신(妊娠), 출산(出產), 분만(分娩)의 기타 간호적응증 | 651 ~ 659 |
| 26. 주로 출산(出產) 및 분만(分娩)증에 일어나는 합병증(合併症) | 660 ~ 668 |
| 27. 신육(產褥)의 합병증(合併症) | 670 ~ 676 |

1. 한국표준사인분류(1980년 개정 시행판 이후)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원전정상분만(650)은 대상이 되는 특정질병이 아님.

(별표 3)

수술의 종류 및 등급표

| 수 술 종 류 | 등 급 | |
|--|---|---------------------------------|
| 피부, 유방의 수술 (皮膚, 乳房의 手術) | 1. 식피술(植皮術) (25cm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 2 종 2 종 |
|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 3. 뼈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 骨結核 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강, 비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의골, 하악골, 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 下顎骨, 頸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齒, 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공변 관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 2 종 2 종 2 종 1 종 |
| | 9. 쇠골, 견갑골, 늑골, 흉골, 관혈수술 (碎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 관절(骨, 関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시지골, 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 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 건, 인대 관절수술(筋, 肌, 韌帶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증, 점액증수술 (筋炎, 結節腫, 粘液腫手術)은 제외함] | 2 종 2 종 1 종 1 종 |
| 호흡기, 胸부의 수술 (呼吸器, 胸部의 手術) |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18. 풍격증 양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 1 종 2 종 2 종 2 종 3 종 |

| 수 술 종 류 | | 등 급 |
|----------------------------|--|---|
|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脾의 手術) | 19. 관혈적혈관형성술 (觀血的血管形成術) [혈액투석용 (血液透析用) Shunt 형성술 (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 (靜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 (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 (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내장개, 봉합술 (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 (直視下心臟內手術) 24. 체내용 (體內用) 매립술 (埋 術) 25. 비적제술 (脾摘除術) | 2 종 1 종 3 종 2 종 3 종 2 종 2 종 |
|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 26. 이하선증 양적출술 (耳下腺腫瘍摘出術) 27. 악하선증 양적출술 (頸下腺腫瘍摘出術) 28. 식도이단술 (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 (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 (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 (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 (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혀장 관혈수술 (肝臟, 臘囊, 胆道, 胆管 觀血手術) 33. 뮤장 근본수술 (脫腸 根本手術) 34. 충수질제술, 맹장봉출술 (虫垂切除術, 盲腸搬出術) 35. 직장탈근본수술 (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 (腸, 腸間膜手術) [개복술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털항, 치핵근본수술 (痔瘡, 脱肛, 痢核根本手術) [근치 (根治)를 목적으로 한것으로 치치. 단순한 치핵 (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 2 종 1 종 3 종 3 종 2 종 2 종 2 종 2 종 1 종 1 종 1 종 2 종 2 종 2 종 1 종 |
| 뇨, 성기의 수술 (尿, 性器의 手術) | 38. 신이식수술 (腎移植手術) [수용자 (受容者)에 한함] 39. 신장, 신우,뇨관, 방광 관혈수술 (腎臟, 腎盂, 尿管, 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 (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뇌도협착 관혈수술 (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 (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 3 종 2 종 2 종 |

| 수 술 종 류 | | 등 급 |
|------------------------------|--|---------------------------------|
| | 41. 뇌루찌제 관혈수술(尿瘻切碎 觀血手術) [경뇨도 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 2 종 |
| | 42. 자궁 광범전적제술(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등의 자궁전적제술(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 3 종 |
| | 43.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 (子宮頸管形成術, 子宮頸管擴張術) | 1 종 |
| | 44. 자궁외임신수술(子宮外妊娠手術) | 2 종 |
| | 45. 자궁탈, 질월수술(子宮脫, 膣脫手術) | 2 종 |
| | 46. 기타의 사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증절술은 제외함 (子宮頸管 Polyp切除術, 人工妊娠中絕術)은 제외함] | 2 종 |
| | 47. 난관, 난소 관혈수술(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質的操作)은 제외함] | 2 종 |
| | 48.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卵管, 卵巢手術) | 1 종 |
|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 49. 하수체종양적제술(下垂體腫瘍摘製術) 50.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51.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製術) | 3 종 2 종 2 종 |
| 신경의 수술 (神經의 手術) | 52.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53. 신경관혈수술(神經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엄제술] (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擦除術) | 3 종 2 종 |
| | 54. 관혈적적수종양적출수술(觀血的脊髓腫瘍摘出手術) | 3 종 |
| | 55.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 2 종 |
|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 視器의 手術) | 56. 안검하수증수술(眼瞼下垂症手術) 57.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58. 누닝코링문합술(淚曩鼻腔吻合術) 59. 결막난형성술(結膜囊形成術) 60.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 1 종 1 종 1 종 1 종 1 종 |

| 수 술 종 류 | | 등급 |
|------------------------------|--|--|
| | 61. 관절적전방, 흉채, 초자체, 안외내이울제거술 (觀血的前房, 胸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2. 흉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粘着剝離術) 63. 눈내장 관절수술(眼內障 濾血手術) 64. 백내장, 수정체 관절수술(白內障, 水晶體 觀血手術) 65. 초자체 관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66.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67. Laser, 냉동용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68. 안구적제술, 조직증전술(眼球摘除術, 組織充填術) 69. 안외증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0.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 1 종 1 종 2 종 2 종 1 종 1 종 1 종 2 종 2 종 1 종 |
| 감각기, 청기의 수술 (感覺器, 聽器의 手術) | 71. 관절적고막, 고실형성술(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72. 유양동식개술(乳樣洞削開術) 73. 중이근본수술(中耳根本手術) 74. 내이 관절수술(內耳 觀血手術) 75. 청신경증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 | 2 종 1 종 2 종 2 종 3 종 |
|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 76.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77. 악성신생물온열료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78.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 3 종 1 종 2 종 |
|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以外의 手術) | 79.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0.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1. 상기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2.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 종 2 종 1 종 2 종 |

| 수 술 종 류 | 등 급 |
|--|--------|
|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 1 종 |
| 83.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 후두, 평부, 복부장기수술(腦, 喉頭, 胸部, 腹部臟器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84.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 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1 종 |

단, 제왕절개 만출술 (帝王切開 婦出術)은 본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 수술이 아님.

(일 · 일)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치료를 위한 입원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상의 치료, 정상분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인간독크 검사등을 위한 입원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정형 수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개두술

“개두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개흉술

“개흉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용막, 폐장, 심장, 황경막, 종격 등,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기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개복술

“개복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심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채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등 복강내에 조작을 기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노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한가족보험 여성별보장특약관 (부부형)

한 가족 보험 예설 병 보장 특약(부부형)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 조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획정]

① 이 보험에 있어서 "특정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2(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질병의 진단획정은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병리조작학적 소견, 세포학적 소견, 이학적소견(X선, 내시경등), 임상학적소견 및 수술소견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 3 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한민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하며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직(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人), 천지(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별표3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 참조)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는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에게 다음과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금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였을 때 : 입원금여금 지급

2. 특정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급여금 지급

다만, 동시에 2가지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중 수술급여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쪽 한가지 수술만을 받은 것으로 하여 수술급여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동일 특정질병(이외 의학상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 특정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입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른 특정질병에 의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을 지급하였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증명해 서하여 조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서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스스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 또는 수술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입원 또는 수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수의사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 또는 수술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사가 급여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진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입원 또는 수술하게 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현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 2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외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보험료를 자동대출납입하는 경우나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언제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별지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개별지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개별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입원 또는 수술진단서, 의사의 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사용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기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민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일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주계약과 함께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약시까지 이 약관을 고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정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계약보험가입금액 : 40만
40세, 60세납, 월납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16 | 0 | 19 | 0 |
| 1 년 | 192 | 0 | 228 | 0 |
| 5 년 | 960 | 178 | 1,140 | 261 |
| 10 년 | 1,920 | 638 | 2,280 | 817 |
| 20 년 | 3,840 | 1,531 | 4,560 | 1,995 |
| 만 기 | 3,840 | 0 | 4,560 | 0 |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구 분 | 지급사유 | 지 급 액 |
|-------|------------------------------------|---|
| 입원급여금 |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 / 1,000 해당액 |
| 수술급여금 | 특정질병 또는 제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하였을때 | 1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1000 2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1000 3종수술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5/1000 |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 분류항목 | 국제기본분류번호 |
|---|-----------|
| 1. 구순(口脣), 구강(口腔), 및 인두(咽頭)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40 ~ 149 |
| 2. 소화기(消化器) 및 복막(腹膜)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50 ~ 159 |
| 3. 호흡기(呼吸器) 및 흉관내장기(胸廓內臟器)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60 ~ 165 |
| 4. 뼈, 결합조직(結合組織), 피부(皮膚) 및 유방(乳房)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70 ~ 175 |
| 5. 비뇨생식기(泌尿生殖器)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79 ~ 189 |
| 6. 기타 및 상세불명부위(詳細不明部位)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190 ~ 199 |
| 7. Lympha 조직(組織) 및 조혈조직(造血組織)의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 200 ~ 208 |
| 8. 유방(乳房)의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17 |
| 9. 자궁(子宮)의 평활근종(平滑筋腫) | 218 |
| 10. 자궁(子宮)의 기타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19 |
| 11. 난소(卵巢)의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20 |
| 12. 기타의 여성성기(女性性器)의 양성신생물(良性新生物) | 221 |
| 13. 정상소재(正常所在)의 암종(癌腫) | 230 ~ 234 |
| 14. 당뇨병(糖尿病) | 250 |
| 15. 민성(慢性)류마치스성 심질환(心疾患) | 393 ~ 398 |
| 16. 고혈압성질환(高血壓性疾患) | 401 ~ 405 |
| 17. 하혈성심질환(虛血性心疾患) | 410 ~ 414 |
| 18. 기타형의 심질환(其他心疾患) | 420 ~ 429 |
| 19. 뇌혈관질환(腦血管疾患) | 430 ~ 438 |
| 20. 유방(乳房)의 장해(障害) | 610 ~ 611 |
| 21. 여성골반내장기(女性骨盤內臟器)의 염증성질환(炎癥性疾患) | 614 ~ 616 |
| 22. 여성생식로(女性生殖路)의 기타장해(其他障害) | 617 ~ 629 |

| 분류항목 | 국제기본분류번호 |
|--|-----------|
| 23. 유산이 초래되는 임신 | 630 - 639 |
| 24. 주로 임산(妊娠)에 관련된 합병증(合併症) | 640 - 648 |
| 25. 임신(妊娠), 출산(出產), 분만(分娩)의 기타 간호적응증 | 651 - 659 |
| 26. 주로 출산(出產) 및 분만(分娩)중에 일어나는 합병증(合併症) | 660 - 668 |
| 27. 산욕(產褥)의 합병증(合併症) | 670 - 676 |

1. 한국표준사인분류(1980년 개정 시행판 이후)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완전정상분만(650)은 대상이 되는 특정질병이 아닙니다.

(별표 3)

수술 종류 및 드고보증표

| 수술 종류 | | 등급 |
|---------------------------------------|--|---------------------------------|
| 피부, 유방의 수술 (皮膚, 乳房의 手術) | 1. 식피술(植皮術) (25cm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 2 종 2 종 |
| 근골의 수술 (筋骨의 手術) [빌정술(抜釘術)은 제외함] | 3. 뼈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골결핵 수술(骨髓炎, 骨結核 手術) [농양(臍病)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 비중격(鼻骨,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하악골, 악관절 관절수술 (上顎骨, 下顎骨, 頸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齒, 齒肉)의 치자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골반 관절수술(脊椎, 骨盤 觀血手術) | 2 종 2 종 2 종 1 종 2 종 |
| | 9. 쇠골, 건갑골, 늑골, 흉골, 관절수술 (蹠骨, 肩胛骨, 肋骨,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시자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 [골, 관절(骨, 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 사지관절 관절수술(四肢骨, 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 건, 인대 관절수술(筋, 韌帶, 韌帶 觀血手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결절증, 점액증수술 (筋炎, 結節腫, 黏液腫手術)은 제외함] | 1 종 2 종 1 종 1 종 |
| 호흡기, 평부의 수술 (呼吸器, 胸部의 手術) |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16. 기관, 기관지, 폐, 평막수술(氣管, 氣管支, 肺, 胸膜手術) [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17. 흉곽형성술(胸郭形成術) 18. 종격증 양지출술(縱隔腫瘍摘出術) | 1 종 2 종 2 종 2 종 3 종 |

| 수 술 종 류 | | 등 급 |
|----------------------------|--|---|
| 순환기, 비의 수술 (循環器, 脾의 手術) | 19. 관절적혈관형성술(觀血的血管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Shunt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21.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2. 심막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23.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24. 체내용(體內用) 매립술(理 術) 25. 비적제술(脾摘除術) | 2 종 1 종 3 종 2 종 3 종 2 종 2 종 |
| 소화기의 수술 (消化器의 手術) | 26. 이하선증 양적출술(耳下腺腫瘍摘出術) 27. 악하선증 양적출술(頸下腺腫瘍摘出術) 28. 식도이인술(食道離斷術)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0. 기타의 위, 식도수술(胃, 食道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32. 간장, 담낭, 담도, 췌장 관절수술 (肝臟, 膽囊, 胆道, 脾臟 觀血手術)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34. 총수절제술, 맹장농축술(虫垂切除術, 盲腸縫縮術) 35. 직장탈근본수술(直腸脫根本手術) 36. 기타의 장, 장간막수술(腸, 腸間膜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7. 치루, 탈항, 치핵근본수술(痔瘻, 脱肛, 痔核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것으로 치치,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 2 종 1 종 3 종 3 종 2 종 2 종 2 종 2 종 1 종 1 종 2 종 2 종 2 종 2 종 1 종 |
| 뇨, 성기의 수술 (尿, 性器의 手術) |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수용자(受容者)에 헌함] 39. 신장, 신우, 뇨관, 방광 관절수술 (腎臟, 腎盂, 尿管, 膀胱 觀血手術) [경뇨도 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40. 뇨도협착 관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경뇨도 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 3 종 2 종 2 종 |

| 수 : 술 종 류 | | 등급 |
|------------------------------|--|---------------------------------|
| | 41. 노루폐쇄 관절수술 (尿瘻閉塞 觀血手術) [경도 적조작 (輕尿道的操作)은 제외함] | 2 종 |
| | 42. 자궁광범전적제술 (子宮廣汎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 (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 (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 3 종 |
| | 43. 자궁경관형성술, 자궁경관봉축술 (子宮頸管形成術, 子宮頸管縫縮術) | 1 종 |
| | 44. 자궁외임신수술 (子宮外妊娠手術) | 2 종 |
| | 45. 자궁탈, 질탈수술 (子宮脫, 膜脫手術) | 2 종 |
| | 46. 기타의 자궁수술 (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증절술은 제외함 (子宮頸管 Polyp 切除術, 人工妊娠中絕術)은 제외함] | 2 종 |
| | 47. 난관, 난소 관절수술 (卵管, 卵巢 觀血手術) [경질 적조작 (輕膜的操作)은 제외함] | 2 종 |
| | 48. 기타의 난관, 난소수술 (那管, 卵巢手術) | 1 종 |
|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 49. 하수세증 양적제술 (下垂體肺鳩摘製術) 50. 갑상선수술 (甲狀腺手術) 51. 부신전적제술 (副腎全摘製術) | 3 종 2 종 2 종 |
| 신경의 수술 (神經의 手術) | 52. 두개내 관절수술 (頭蓋內 觀血手術) 53. 신경관절수술 (神經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移植술, 김입술, 개방술, 염제술] (形成術, 移植術, 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 3 종 2 종 |
| | 54. 관절적척수증 양적출수술 (觀血的脊髓腫瘤摘出手術) | 3 종 |
| | 55. 척수경막내외 관절수술 (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 2 종 |
| 감각기, 시기의 수술 (感覺器, 視器의 手術) | 56. 안검하수증수술 (眼瞼下垂症手術) 57. 누소관형성술 (淚小管形成術) 58. 누낭비강문합술 (淚囊鼻腔吻合術) 59. 결막낭형성술 (結膜囊形成術) 60. 각막이식술 (角膜移植術) | 1 종 1 종 1 종 1 종 1 종 |

| 수 술 종 류 | | 등 급 |
|------------------------------|--|--|
| | 61. 관혈적진방, 흉채, 초자체, 안외내이울제거술 (觀血的前房, 虹彩, 硝子體, 眼窩內異物除去術) 62. 흉채진후유착벽리술(虹彩前後粘着剝離術) 63. 눈내장 관혈수술(眼內障 觀血手術) 64. 베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 觀血手術) 65.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66. 망막비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67. Laser, 냉동용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68. 안구적제술, 조직증전술(眼球摘除術, 紋織充填術) 69. 안외증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70. 인근이식술(眼筋移植術) | 1 종 1 종 2 종 2 종 1 종 1 종 1 종 2 종 2 종 1 종 |
| 감각기, 청기의 수술 (感覺器, 聽器의 手術) | 71. 관혈적고막, 고실험성술(觀血的鼓膜, 鼓室形成術) 72. 유양동식개술(乳樣洞削開術) 73. 중이근본수술(中耳根木手術) 74.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75. 청신경증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 | 2 종 1 종 2 종 2 종 3 종 |
| 악성신생물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 76. 악성신생물근치수술(惡性新生物根治手術) 77. 악성신생물온열료법(惡性新生物溫熱療法)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78. 기타의 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 3 종 1 종 2 종 |
| 상기이외의 수술 (上記以外의 手術) | 79. 상기이외의 개두술(開頭術) 80. 상기이외의 개흉술(開胸術) 81. 상기이외의 개복술(開腹術) 82.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 종 2 종 1 종 2 종 |

| 수 술 종 류 | | 등 급 |
|----------------------------|---|--------|
| | 83.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 후두, 咽部, 胸부 정기수술(腦, 喉頭, 胸部, 腹部臟器手術) [감시, 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험] | 1 종 |
| 신생물근치방사선조사 (新生物根治放射線照射) | 84.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5,000 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험] | 1 종 |

단, 제왕절개 만출술 (帝王切開 婦出術)은 본 수술금여금의 지급대상 수술이 아님.

(비) 고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 이런 치료를 위한 입원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상의 치료, 정상분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인간독크 검사등을 위한 입원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이런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정형 수술,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개두술

“개두술” 이런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개흉술

“개흉술” 이런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용믹, 폐장, 심장, 평경막, 증격 등,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개복술

“개복술” 이런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심이지장, 소장, 대장, 총수, 간장 및 담도, 쇄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빙경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한가족보험 자녀보장특약 약관

한국화재보험 자녀보험약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원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에서 “주원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나 가입자나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었던 주계약의 피보험자 사망에 의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④ 회사는 제 3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에 기재된 자녀로 합니다.

제 3 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대한민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하며 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연금 또는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1. 피보험자가 별표2(제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동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 내지 제6급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된 후 매년의 장해발생일에 살아있을 경우 : 장해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별표4(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 입원급여금 지급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선제의 동일부위에서 기증된 장해일 때에는 최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만을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있어서 재1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제2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미 장해연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새로 발생된 장해연금에서 그 장해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드립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④ 제1항 제1호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간주하여 각입院일수를 합산하여 급여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원인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후 되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⑦ 제1항 제2호의 경우 입원이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판정은 그 입원이 이후 이전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입원중의 병명 변경시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초의 입원사유에 의한 합병증 내지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소견시기 있을 경우에는 동일원인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⑧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동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계속증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⑨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장해연금 및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해연금 및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신을 해침으로서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수의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의지가 장해연금 또는 입원급여금의 일부 수의지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다른 수의지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장해연금 또는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자동대출납입하는 경우니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연체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언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와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차인식)
2. 시고증명서(입원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9조에 정한 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연금,급여금 또는 해약한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연금, 급여금 또는 해약한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한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신축방법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한급금 예시표” 참조)

④ 제2회이후의 장해연금과 해약한급금은 그 시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윤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한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 12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한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중도가입 특칙 (中途加入 特則) >>

제 14 조 [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주보험의 제1보험기간중 주보험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동시에 살아있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주보험의 제1보험기간중에 새로이 태어난 자녀를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하여 이 특약을 주보험에 부가할 것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하 이 특약의 제과율 “중도가입”이라 합니다.

제 15 조 [중도가입시의 계약일 및 책임개시일]

① 회사가 이 특약의 중도가입을 승낙한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이 특약의 청약일 직전의 주보험의 보험계약해당일에 체결된 것으로 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를 계산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징수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 특약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 16 조 [보험증권에의 배서]

회사가 이 특약의 중도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별표)

해 약 환 급 금 예 시 표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
주피보험자 40세
가입자녀 3세
20년민기, 20년납, 월납

| 구 분 | 남 자 | | 여 자 | |
|------|-------|-------|-------|-------|
|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
| 1 개월 | 21 | 0 | 21 | 0 |
| 1 년 | 252 | 0 | 252 | 0 |
| 5 년 | 1,260 | 438 | 1,260 | 440 |
| 10 년 | 2,520 | 873 | 2,520 | 873 |
| 만 기 | 5,040 | 0 | 5,040 | 0 |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 가입금액)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 |
|-----------|--|------------------|------|------|------|
| 입 원 금 여 금 |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입원시 | 3일초과 1일당 : 0.1 % | | | |
| 장 해 연 금 |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장애상태가 되고 매년 장해 발생일에 생존시 | 급 수 | 1 급 | 2 급 | 3 급 |
| | | 지급액 | 35 % | 30 % | 25 % |
| | | 금 수 | 4 급 | 5 급 | 6 급 |
| | | 지급액 | 20 % | 15 % | 10 % |

(별표 2)

재해 분류 표

재해란 힘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정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별별하거나 그 증상이 더러운 환경을 떠나
부류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로서 다음 분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인분류) (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중
순수(종류의 외관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류 항목]

| 분류 항목 | 분류 번호 |
|---|----------------------------|
| 1. 철도 사고 | E 800 ~ E 807 |
| 2. 자동차 교통 사고 | E 810 ~ E 819 |
| 3. 자동차 비교통 사고 | E 820 ~ E 825 |
|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 E 826 ~ E 829 |
|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 E 830 ~ E 838 |
|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 E 840 ~ E 845 |
|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개인용기, 분류기 등) | E 846 ~ E 848 |
|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의용약품은 약물집약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증은 제외한다. | E 850 ~ E 858 |
| 9. 기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 내지 790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 E 860 ~ E 869 |
| 10. 외래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치료기관의 고의 또는 고설이 있는 사고는 제외한다. | E 870 ~ E 876 |
| 11. 불의의 주락 | E 880 ~ E 888 |
|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 E 890 ~ E 899 |
| 13. 진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금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될수는 제외된다. | E 900 ~ E 909 (276.5) |
| 14. 익수, 절식 및 아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절명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침해는 제외된다. | E 910 ~ E 915 |
|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고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 E 916 ~ E 928 (E 927) |
| 16. 치료실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상분제제에 의한 사고 | E 930 ~ E 949 |
| 17. 타살 및 타인의 기해에 의한 살해 | E 950 ~ E 959 |
| 18. 법적개입, 다민, 처형은 제외한다 | E 970 ~ E 978 (E 978) |
| 19. 불의인정, 과의인정, 분명치 않은 상해 | E 980 ~ E 989 |
|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 E 990 ~ E 999 |
| 21. 전역별 예방법 제2조 제1항 | |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 등급 | 신체 장해 |
|-------|---|
| 제 1 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밀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 제 2 급 |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 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 2 부터 7 까지 중의 신체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 급의 2 부터 7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5 부터 11 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 제 3 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 대 관절 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 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 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 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적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
| 제 4 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밀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

| 등급 | 신체장애 |
|-------|---|
| | <p>5. 한팔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다리가 영구히 5 cm이상 단축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중 적이도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p>10. 한손의 5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 벌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 벌가락을 잃었을 때</p> |
| 제 5 급 | <p>1. 한팔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2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4.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3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발의 5 벌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두주의 침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9. 한주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p> <p>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
| 제 6 급 | <p>1. 한팔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 대 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가 영구히 3 cm이상 단축되었을 때</p> <p>4.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5.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 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 손가락 또는 3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이외의 1 손가락 또는 2 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한발의 첫째 벌가락 또는 다른 4 벌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발의 첫째 벌가락을 포함하여 3 벌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 생활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런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ㆁ, ㅂ, ㅍ), 치설음(ㄴ, ㄷ, ㄱ), 구개음(ㅈ, ㅊ), 후두음(ㆁ,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종족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 + 2b + 2c + 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헤黠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필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필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필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필다리 각각의 3대관절(필온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벌복)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필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필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기슴 등뼈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멀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 손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멀절골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죽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빌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 6, 7, 8, 9,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분류항목 | 국제기본 분류번호 |
|--|-------------|
| 1.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001 ~ 139 |
| 2. 신생물 | 140 ~ 239 |
| 3.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과 면역장애 | 240 ~ 279 |
| 4. 혈액 및 조혈기의 질환 | 280 ~ 289 |
| 5. 신경계 및 감각기의 질환 | 320 ~ 389 |
| 6. 순환기계의 질환 | 390 ~ 459 |
| 7. 호흡기계의 질환 | 460 ~ 519 |
| 8. 소화기계의 질환 | 520 ~ 579 |
| 9.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 580 ~ 629 |
| 10. 임신, 출산 및 산육의 합병증 | 630 ~ 676 |
|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680 ~ 709 |
|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 710 ~ 739 |
| 13. 주신기에 관련된 일정한 병태 | 760 ~ 779 |
| 14. 중상, 정후 및 불명확한 병태 | 780 ~ 799 |
| 15. 손상 및 중독 | 800 ~ 999 |
|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보조분류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 E800 ~ E999 |

(주) 다음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정신장해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일률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불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인가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물임수술, 제왕 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